〈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정 보 공 개 서

(주)순수패밀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8022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03.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6.08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4(청담동) (주)순수패밀리 대표번호(가맹사업 담당부서와 동일) **TEL** 02.540.3691 **FAX** 02.540.369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 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 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 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u>i</u>	(주)순수패밀리		영업표지		순수				
주소	2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4, 7				- 7층(청담동)			
법인설립	등기일	20	17. 9. 18.	사업자 등록 일		2017. 9. 25.				
법인등록	- 번호	1101	11-6519677	사업자 등록 법	번호	831-86-00636				
대표자	이순철,	최수경	대표전화번호	02-540-3691	대표팩	스번호	02-540-369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중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1 A =1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4, 7층(청담동)			
	공동 이순철/ 대표이사 (주)순수패밀리	순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 - 1 - 1			이순철,최수경	02-540-3691	02-540-3692			
			서울시 강남구	^L 도산대로61길 4	, 7층(청담동)			
공동 대표이사	최수경/ (주)순수패밀리	순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 31 -11	(干/ᇿ干쁴 르니 		이순철,최수경	02-540-3691	02-540-3692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순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의미
상 호	순수 00	당사는 가맹점주가 희망하는 색상을 지정하여 가맹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예 : 순수 레드)
상표(서비스표)	순수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299370000 45-0048933 자세한 내용은 I-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2,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21,786	57,615	164,170	561,708	3,911	91,043
2022년	227,723	34,461	193,261	454,821	-3,673	29,090
2023년	230,750	36,894	193,855	400,583	-13,889	594

- 그 근거자료는 별첨 서류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항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직위	사업경력					
한민어구	판단어구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07.10~2019.09	순수 도산점 대표	ul & Y[(O] HF)			
가맹사업	이순철	공동	2019.10.~현재	순수 청담본점 대표	미용사(일반)			
관련 임원	-122	대표이사	2017.09~현재	(주)순수패밀리 대표이사	업무총괄			
			2011.04~2019.09	순수 청담점 대표	미용사(메이크업)			
가맹사업	최수경	공동	2019.10.~현재	순수 청담본점 대표	미용자(메이급)			
관련 임원		대표이사	2017.09~현재	(주)순수패밀리 대표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이스/대)	
시엄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_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44 류	출원일	출원	이순철	2032.04.09

					<u> </u>
1		2011.01.07 등록일 2012.04.09	제 41-20110000504 호 등록 제 41-02299370000 호	최수경	(2032.04.09)
For You'r STV 5	44 류	출원일 2013.03.04 등록일 2014.04.08	출원 제 45-20130001147 호 등록 제 45-0048933 호	이순철 최수경	2034.04.08 (2034.04.08)

-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순수】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순수】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3월 7일

2. 【순수】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순수패밀리	순수	이순철 최수경	2018 년 3 월 7 일~현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1 길 4, 7 층 (청담동)

3. 【순수】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순수 	이미용	미용, 메이크업, 두피관리, 스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순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104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1	1	9	8	1	9	8	1
서울	4	3	1	3	2	1	3	2	1
부산	2	2	-	2	2	-	1	1	-
대구	-	-	_	-	-	_	_	-	-
인천	_	-	_	-	-	-	_	-	_
 광주	_	-	-	_	-	-	_	-	-
대전	-	-	_	-	-	-	_	-	-
울산	_	-	_	-	-	-	_	-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6	6	_	4	4	-	5	5	_
강원	_	_	_	_	-	_	_	-	_
충북	_	_	_	_	_	_	_	_	_

									7
충남	_	_	_	_	_	_	_	_	- '
전북	_	-	-	_	-	_	_	-	-
전남	_	-	_	_	-	_	_	-	-
경북	_	_	_	_	-	_	_	-	_
경남	_	-	_	_	-	-	_	-	-
제주	_	_	_	_	-	_	_	-	_

5. 바로 전 3년간 【순수】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1	2	1	1	_	11
2022	11	2	4	1	_	8
2023	8	1	_	1	_	8

6. 【순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순수】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순수】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대	개출액	연간 평균 (상한	매출액)	연간 평균 (하한)	매 <i>출</i> 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8	626,102	14,168	860,362	21,509	409,017	8,505	6곳대상
서울	2	해당없음		<u> </u>				5곳미만



경기	5	642,901	17,468	860,362	21,509	409,017	14,701	3곳대상
부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으나 지역별 구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5곳 미만으로 평균매출액 기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의 선정은 2023년 8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배곧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1개 가맹점(안산 올리브점)은 일반 미용실이 아닌 웨딩홀 내에 입점하여 웨딩 고객(신랑, 신부, 혼주)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표에서 기재한 (하한)은 전체 가맹점 수 8개가 아닌 실제 6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순수】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순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	1004 일(2 년 8 월)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순수】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۸rl	지출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수단 기간			비고	
구분	구단 	기산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0177
합계						
광고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납입하실 가맹금은 별도의 예치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등의 체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담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순수패밀리	가맹본부
 피보험자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	
보험기간	계약체결일~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 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장범위	가맹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반환보증	예치가맹금 범위내
지급조건	가맹사업계약에 따른 예치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및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순수】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27,500	계약제걸 후 1일 이내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60%) -개점 전 서비스 교육(가맹비의 40%)

* 반환조건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금액	납부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2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 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 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 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직전년도 전체 가맹 점사업자의 1회 평 균 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 포 함)의 3배 이내

- * 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VAT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47,500	33,750	
가맹비(교육비 포함)	27,500	13,750	
보증금	20,000(VAT없음)	20,000(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165 ㎡기준(약 50 평)	면적 3.3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244,200	4,884		
인테리어	미지정	165,000	3,300		
간판	자체조달	5,500	110	당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매장상황 및 가
홀집기	자체조달	38,500	770		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변동
시술기기 및 집기	자체조달	22,000	440	이후에는 반환 될 수 없음	44 68
기타소모품	가맹본부	3,300	66		_
초도물품	가장군구	9,900	198		_
별도금액	자체조달	철거, 화장실, 냉난방7 가스증설, ⁷	, 소방설비, ^요 전화기, 컴퓨터		매장상황 및 가 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변동

- ① 위 표의 금액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및 간판의 경우 직접 설치/구매 시에는 3.3m²당 330,000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설계비,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다만,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로 진행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기존 입점지로부터 반경 700m 이상 이격 되는 곳을 기준으로 브랜드의 적합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 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미요시 머리 스키지이 거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용사 면허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점포규모: 165㎡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조건 및 : 없는 사유	<u>,</u>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광고 실시 0 반환되지 않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VII-1. 점포환경 제외한 나머지 비용지원 내역		개선 시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0 반환되지 않	후에는 음	
포스	협력업체	포스 공급업체와 직접 공급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함				
로열티	가맹본부	아래 표 참고	다음 월 10일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7,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 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 을 시 부담

로열티 산정 기준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65㎡ 미만 (구. 50평)	165㎡이상 ~198㎡미만	198㎡이상 (구. 60평)	특수매장
금액	1,540,000	1,760,000	1,980,000	2,750,00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①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②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주문자생산방식(OEM)을 통해 제작, 납품 된 품목은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의 차액을 계산하여 각 차액가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에 구입하고도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2023년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당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을 가맹점들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나 눈 비율입니다.

3) 가맹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 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분당합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당사에 가맹비(1,375만원, VAT포함), 교육비(가맹비에 포함), 보증금(2,000만원, VAT없음)을 납

기 기하인 자

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찬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2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2,750만원, VAT포함), 교육비(가맹비에 포함), 보증금(2,000만원, VAT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순수】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frac{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순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유니폼 등 당사의 로고가 있는 비품 및 기타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관여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 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순수】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순수】의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서비스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서비스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순수】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NO	판매 상품·용역명	서울지역 권장가격(단위:원)	기타지역 권장가격(단위:원)
----	-----------	-----------------	-----------------

/,	
7	4

1 첫 (원장) 40,000 30,000 2 첫 (직원) 30,000 25,000 3 드라이 30,000 20,000 4 일반펌 150,000 90,000 5 클리닉펌 200,000 150,000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7 매직 300,000 25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메이크업(이벤트)				
3 드라이 30,000 20,000 4 일반펌 150,000 90,000 5 클리닉펌 200,000 150,000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7 매직 300,000 20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	컷 (원장)	40,000	30,000
4 일반펌 150,000 90,000 5 클리닉펌 200,000 150,000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7 매직 300,000 25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2	컷 (직원)	30,000	25,000
5 클리닉펌 200,000 150,000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7 매직 300,000 20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3	드라이	30,000	20,000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7 매직 300,000 20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4	일반펌	150,000	90,000
7 매직 300,000 20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5	클리닉펌	200,000	150,000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6	디지털/세팅	250,000	200,000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7	매직	300,000	200,000
10 컬러 120,000 9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8	볼륨매직	350,000	250,000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9	매직세팅	400,000	300,000
12 두피 100,000 8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10	컬러	120,000	90,000
13 메이크업(베이직)	11	트리트먼트	120,000	80,000
	12	두피	100,000	80,000
14 메이크업(이벤트)	13	메이크업(베이직)		
	14	메이크업(이벤트)		

한편,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제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한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제재 등과 관련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 명 및 권장가격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 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일만 답중 함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 메이크업, 두피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순수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7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점포는 등에 상응하 는 별도의 독립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순수】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시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 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37.87%	62.1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순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커팅기법 또는 서비스기법 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 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 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 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① 제6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4장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③ 제5장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④ 제7장의 교육, 훈련,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⑤ 제37조 "동"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⑥ 제38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⑦ "행"이 "동"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⑧ "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동"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⑨ "행"이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계약 조문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31조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 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⑥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①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 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⑧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⑨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 ⑩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

시, 전전세, 점과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 에 따른 기간	헤어전문점, 메이크업전문점, 두피전문점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순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계약체결	및 휴무는 셜시 협의 속하여 2일 이상 는 당사의 승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165 m³(약 50 평) 기준]	직접 근무 여부	
디자이너 7명, 스텝 7명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순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u>!</u>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	점모집광고	100%	_	_
	가	l별광고	_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브랜드광고			
	전국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전체 가맹점 에 안분)	광고/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전국 및 지역별판촉				
판촉	가	l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영업중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3자에게 제38조의 내용에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미만 시 2개월분, 1년이상 ~2년미만 시 4개월분, 2년이상 시 6개월분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

급하여야 합니

별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항(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당사 또는 당사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49일 내외 (점포개발 및 상 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D-49~42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희망자 상담	(변호사 및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D-35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 인	D-33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D-30~7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D-15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미용재료 등 입고	D-7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D-3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경우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경우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경우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 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 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상에 의무의 시비, 등이 보고 이에 모르지 생의 보고 이에 되는 이 사이를 이 사이를 이 사이를 이 사이를 이 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 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있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 급(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 능) ▶기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점 포환경 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책임없는 부의로 계약의 제양되는 경업양도 경우하이 이 기의 본부 전에 지하이 이미 우에 하나 지하는 하지 이미 우에 하는 한수 가능

	7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지원	가맹점 오픈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부담경감	조건 없음	오픈일로부터 3개월	월 납부 로열티 최대 30% 할인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순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신규교육 일정]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개점전)	5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000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신서비스 교육 (개점후)	1일 (서비스에 따라 상이)	실비	매 분기별 필수적으로 이수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서비스 교육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서비스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 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대차대조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손익계산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